

출장비 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00. 3. 1.
- 개정 : 2017. 9. 1.
- 개정 : 2017. 12. 28.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19. 6.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원 및 연구과제 참여하는 연구원의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출장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의 구분) 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출장”은 교무로 국내에 출장하는 것을 말함
2. “국외출장”은 교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것을 말함

제3조(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국내출장비와 국외출장비로 구분하되, 국내출장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고 국외출장비는 운임과 체재비로 한다.

제4조(출장신청) ①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출장신청서를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국외출장은 여행 초일 5일 전에, 국내출장은 여행 초일 2일 전에 해당부서에 제출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직원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전 제1호의 정한 기일 내에 총무과에 제출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은 전 제1호의 정한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
- ② 공인된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신청 시에는 그 내용을 증빙하는 관계 공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출장복명) 출장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를 작성, 교원은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해당부서에,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무과에, 연구참여 연구원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비의 지급구분과 결재) ①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② 국내 및 국외 출장비의 지급결재는 지출결의서, 출장복명서, 출장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한다.
- ③ 출장비신청서의 구분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3-8 출장비 규정

④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로 적용한다.

제7조(출장비의 계산) 출장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하여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과한 일정 에 의하여 출장비를 계산한다.

제8조(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 장 국내출장비

제9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출장의 운임은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선박운임과 항공운임으로 구분 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로 이를 지급한다.

② 학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차량 이용 불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여 실비 또는 주유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일비 등의 지급) ① 국내출장의 일비, 숙박비, 식비, 통행료, 주차비는 정액 또는 실비로 이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로 이를 지급한다.

③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 식비는 숙박일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선박운임 이외에 별도로 식비 를 필요로 하거나 선박운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식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⑤ 국내 출장의 실비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1식 8,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출장의 일비) 출장의 경우에는 1일 2만원을 지급한다.

제 3 장 국외출장비

제12조(운임의 지급) 국외출장의 운임(항공운임 또는 선박운임)은 실비정액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체재비의 지급) ① 국외출장의 체재비(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으

로서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3-8 출장비 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